

2003. 11. 4 (화)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사 천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003. 11. 4)

1. 심사경과

- 가. 2003. 10. 23 : 사천시장 제출
- 나. 2003. 10. 23 :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 35호)
- 다. 2003. 11. 4 :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교통관광과장 한 대식)

가. 제안이유

- . 도심지 및 주택 밀집지의 공동주택이 주차 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 난 완화를 도모하고
- .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락 및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기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조례개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80㎡당 1대(안 별표13 제1호)
 - (2)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 : 시설면적 150㎡당 1대(안 별표13 제2호)
 - (3)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당 1대(안 별표13 제3호)
 - (4) 단독주택 :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 면적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안 별표13 제4호)
 - (5)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읍·동 지역은 가구당 1대, 면 지역은 가구당 0.7대(안 별표13 제5호)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은 1홀 당 10대, 골프연습

장은 1타석 당 1대, 옥외수영장은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은 50인당 1대
(안 별표13 제6호)

(7) 기타건축물 : 시설면적 250㎡당 1대(안 별표13 제7호)

-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토록 함
(안 별표1 제4호)
- . 기타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조례내용 보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4조, 제22조)

다. 법적근거

- .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 . 주차장법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영태)

- . 동 조례안은 상기 제안 이유와 같이 도심지 및 주택 밀집지역과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별표1의 기준을 동조 제2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조례안 제15조를 신설하여 별표13(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과 같이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락 및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붙임 대비표 참조)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 . 조례안 제22조의 별표1 제4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추가하여 수혜 폭의 확대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우리시의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시설이 열악한 현 시점에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상위법령 및 예산조치와의 관계, 주민의 의견수렴사항과 사천시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 없음

부설주차장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대비표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관련 별표13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 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당 1대
4. 단독주택	시설면적 130㎡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인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시설면적 130㎡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인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당 1대	읍·동 지역은 세대 당 1대, 면 지역은 세대 당 0.7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 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 1타석 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 정원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 정원100인당 1대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 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 1타석 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 정원10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 정원5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 250㎡당 1대

비 고 : 동일함으로 이하 생략